

※ 유의사항

1.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의 인감보호신청을 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합니다.
3.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신청사유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 예시]

- ① 본인의 발급금지
 - ② 본인, 처(○○○ : 주민등록번호)의 발급금지
 - ③ 본인, 처(○○○ : 주민등록번호), 모(○○○ : 주민등록번호)의 발급금지
 - ④ 다른 읍·면·동에서의 발급 금지(온라인 발급금지)
 - ⑤ 그 밖에 인감보호에 필요한 내용
4. 우무인 날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좌무인을 날인하며 무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인감보호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